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59
----------	-------

발의연월일 : 2026. 4. 2.

발 의 자 : 이주희 · 안도걸 · 김 현
조승래 · 송재봉 · 정진욱
김기표 · 박민규 · 박정현
김선민 · 전종덕 · 손 슬
정혜경 · 김 윤 · 오세희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방송프로그램 구성·운용 및 광고에 관하여 「방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분야에서도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제작 또는 편성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실제와 혼동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8조제1항제4호의3 신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인공지능기술 활용 여부의 고지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에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지 또는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6. (생 략)

②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